

팀원	팀장	부장

Cyber Branch-F 개설 및 이용신청서

■ 고객 기본사항

회사명		연락처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번호	
주 소			
사용자 ID		업무담당자	(직책/성명)

■ 신청 서비스

구 분		신청여부 선택
통합자금관리서비스	계좌통합관리	(신청) / (미신청)
	당행자금집금	(신청) / (미신청)
	타행자금집금	(신청) / (미신청)
대금지급서비스	실시간 대량이체	(신청) / (미신청)
	실시간 급여이체	(신청) / (미신청)
	예금주 성명조회	(신청) / (미신청)
대금수납서비스	가상계좌수납	(신청) / (미신청)
Global CMS		(신청) / (미신청)
부가서비스	대량외화송금	(신청) / (미신청)
	법인카드관리	(신청) / (미신청)

본인은 ‘Cyber Branch-F 개설 및 이용약관’을 승인하고, 동 약관의 내용을 준수할 것을 확약하며
‘Cyber Branch-F 개설 및 이용’을 신청합니다.

■ 상품 설명을 듣고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서비스설명서와 약관을 □수령(□수령거절)함

이
(인)

< 신용정보의 제공/활용 동의서 >

주식회사 국민은행 귀중

이 계약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국민은행이 본인으로부터 취득한 이용신청서에 기재된 정보 및 본 소프트웨어 이용에 관한 일체의 거래정보 및 금융설명정보를 본인에 대한 마케팅 활동 및 수수료수납 등의 업무목적으로 주식회사 국민은행이 직접 사용하는 것에 동의하며, 같은 목적으로 제휴업체인 웨캐시 주식회사 및 웹키시네트웍스 주식회사가 사용할 수 있도록 각각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신청인 : (인)



Cyber Branch-F 수수료 내역서 및 추가신청서

제 1 조 [수수료 내역서]

본인(이하 “갑”이라 합니다)은 귀행(이하 “을”이라 합니다)의 Cyber Branch-F 서비스 이용에 따라 아래와 같이 수수료를 납입할 것을 확약합니다.

서비스 구분			수수료	비 고	
Cyber Branch-F 환경 구축	Cyber Branch-F 서비스 이용을 위한 관련서비스 환경구축 (도메인, 스크래핑, 법인카드시스템 등)		개설 약정수수료 _____ 원	계약 다음 달 일시불 (과세대상이므로 10% 부가세 포함)	
Cyber Branch-F 관리운영서비스	장애유지 보수	- 정기방문을 통한 시스템 정비 - Data Base 관리	월정액 _____ 원 (부가세 포함)	후취 (과세대상이므로 10% 부가세 포함)	
	스크래핑 관리	모듈 유지관리 - 예금잔액 및 거래내역, 잡금이체, - B2B 결제 상품조회, 외화예금 조회 - 신용카드 조회			
	대외기관 채널관리	- 대외기관 채널관리 엔진 장애복구 및 시스템 업그레이드 - 각종 Task Log 파일 유지관리 - 장애복구 Van Interface, 신용카드사 Interface 및 기타 금융기관 Interface			
통합자금관리 서비스	계좌통합관리		월정액 _____ 원	후취	
	당행행자금 집금		당행집금건당 _____ 원	동시출금 / 후취	
			월정액 _____ 원	후취	
대금지급서비스	일반지급	실시간 대량이체		당행이체 건당 _____ 원 동시출금 / 후취	
		실시간 급여이체		타행이체 건당 _____ 원 동시출금 / 후취	
		예금주 성명조회		당행이체 건당 _____ 원 동시출금 / 후취	
				타행이체 건당 _____ 원 동시출금 / 후취	
				당행조회 건당 _____ 원 후취	
				타행조회 건당 _____ 원 후취	
대금수납서비스	일반수납	가상계좌수납	계좌재번	채번계좌당 _____ 원 동시출금 / 후취	
			입금내역제공	입금건당 _____ 원 동시출금 / 후취	
Global CMS	전용선방식		해외법인 계좌조회	월정액 _____ 원 후취	
			해외법인 계좌이체지시	월정액 _____ 원 후취	
			해외법인 자금집금지시	월정액 _____ 원 후취	
	SWIFT 방식		해외법인 계좌조회	월정액 _____ 원 후취	
			해외법인 계좌이체지시	월정액 _____ 원 후취	
	해외점포 연계 GCMS	해외법인 계좌조회	월정액 _____ 원	후취	

서비스 구분		수수료	비 고
부가서비스	대량외화송금	월정액 _____ 원 (외화송금 수수료, 전신료 별도)	후취
	법인카드관리	월정액 _____ 원	후취

- ※ 1. 위의 서비스별 수수료는 동시출금 방식의 경우 거래 실행시 해당 출금계좌에서 거래액과 합산되어 동시에 출금되며, 정액 또는 후취 방식의 경우 계약 다음 달부터 매월 15일(해당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에 출금됩니다.
2. Cyber Branch-F 관리운영서비스의 월정사용료는 계약 다음 달부터 매월 15일(해당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에 “을”의 제휴업체인 웹케시 주식회사의 대표계좌로 자동이체 합니다.
3. 수수료 출금일 현재 잔액(대출약정이 있는 경우 대출한도 포함) 부족으로 청구금액 전부를 결제할 수 없을 때에는 출금일 이후 “을”은 “을”이 별도로 정한 출금일에 미결제금액을 출금할 수 있습니다.

제 2 조 [글로벌 계좌조회 서비스 이용]

- ① 글로벌 계좌조회 서비스는 “갑”이 신청(지정)한 해외법인/지사 계좌번호와 일치하는 SWIFT MT940 전문 수신내용을 “갑”이 조회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 ② 본 서비스를 위해서는 “갑”이 신청한 “갑”의 해외법인/지사 계좌가 있는 현지 해외은행과 “갑”의 해외법인/지사간의 별도 약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본 서비스는 해외법인/지사 계좌가 있는 현지 해외은행이 “을”에게 통보하는 SWIFT MT940 전문의 정보를 “을”이 “갑”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이므로, “을”의 시스템을 통해 제공되는 “갑”의 해외법인/지사 계좌의 거래내용에 대해서는 “을”이 일체 책임지지 아니 합니다.

제 3 조 [해외법인관리 서비스 이용]

- ① 해외법인관리 서비스는 “갑”의 해외법인이나 지사 또는 사무소 (이하 “해외법인”)가 “을”의 “해외점포” 또는 해외제휴은행(이하 “제휴은행”)에 보유한 계좌 중 “갑”이 본 서비스를 신청한 계좌에 대해 “갑”에게 제공 가능한 다음의 서비스를 말합니다. 다음 각 호의 내용 중 “갑”에게 제공될 서비스 내역은 별도의 해외법인관리서비스 신청서의 서비스 내용과 동일합니다.
1. 계좌조회 : “해외법인”이 “을”의 “해외점포” 또는 “제휴은행”에 보유한 계좌에 대해 “갑”에게 조회 업무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2. 계좌이체 : “해외법인”이 “을”의 “해외점포” 또는 “제휴은행”에 보유한 계좌에서 출금하며 동일 국가 내의 “갑”이 지정한 계좌로 이체하는 업무를 “갑”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3. 자금집금 : “해외법인”이 “을”의 “해외점포” 또는 “제휴은행”에 보유한 다수의 계좌 중 “계좌이체” 서비스에 등록된 계좌에 대해 이체를 활용한 집금업무를 “갑”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 ② “갑”이 본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을”의 “해외점포”에 개설된 계좌의 경우 “갑”이 신청한 계좌의 예금주인 “해외법인”이 “을”의 “해외점포”에 서비스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제휴은행”에 개설된 계좌의 경우 “해외법인”과 해당 계좌가 개설된 “제휴은행”과 “을” 3자 간의 별도 약정이 필요합니다. 본 서비스는 이 신청 및 3자 간의 별도 약정의 적용을 받고 동시에 동 신청 및 약정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받으며 동 신청 및 약정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③ “갑”이 본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제휴은행”은 예금주인 “해외법인”

에게 본 서비스 제공에 따른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④ 거래의 성립은 “갑”이 전송한 조회 및 이체 지시가 “을”의 업무처리 시스템에 수신된 시점에 성립하는 것으로 하며, “을”은 수신된 업무지시를 “갑”的 정당하고 유효한 거래의사로 간주하여 별도의 확인 절차 없이 업무를 처리합니다.
- ⑤ “갑”은 “을”이 이미 수신하여 “을”的 “해외점포” 또는 “제휴은행”으로 전송한 “갑”的 이체 지급지시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을”이 이미 “을”的 “해외점포” 또는 “제휴은행”으로 전송한 이체지급지시의 취소는 예금주인 “현지법인”이 직접 해당 “해외점포” 또는 “제휴은행”으로 요청하는 경우에만 처리할 수 있습니다.
- ⑥ 본 서비스의 계약일 이후 “갑”이 현지법인에 대한 지분을 추가 매입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 매각하는 등 지분보유의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을”에게 동 변경 내용을 서면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4 조 (가상계좌 서비스 이용)

① 가상계좌 서비스업무의 범위

“갑”的 요청에 의하여 “갑”이 보유한 “을”的 계좌(가상계좌)에 입금된 자금을 “갑”的 고객 예금 인출 또는 이체의 청구절차없이 “갑”이 지정한 입금모계좌에 입금처리하고 그 명세는 따로 정한 방법에 의하여 “갑”에게 전송합니다.

② 가상계좌의 개설

1. “갑”은 “갑”的 고객이 연계업무를 이용하기 위한 자금이체전용 가상계좌를 “을”에게 개설하여야 합니다.
2. “갑”은 가상계좌를 부여받은 고객에게, “가상계좌는 은행을 통하여 “갑”에게 자금입금거래를 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인식계좌(가상계좌)로서 본인확인을 위한 전산코드 또는 CMS코드로 사용됨”을 고지하여야 합니다.
3. “갑”은 “을”로부터 부여받은 가상계좌번호를 “을”이 허용한 업무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됩니다.

③ 업무처리시간

1. 업무처리 시간은 원칙적으로 “을”的 영업 시간 내로 합니다.
2. “갑”은 “을”的 영업시간외 업무처리를 하고자 하는 경우 시간외 연계서비스 업체가 정상적으로 접속되도록 자체 “서비스”的 업무개시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3. 시간외 연계서비스의 운영과 관련하여 미처리 또는 오류가 발생한 경우에 다음 영업일 “을”的 영업 시간 중에 처리하기로 합니다.

④ 수표입금

연계입금은 현금에 의한 입금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부득이 타점권을 입금하고자 경우에는 “갑”的 전산시스템에서 보완하여야 하며, 타점권으로 입금된 금액은 입금 다음 영업일 타점권 결제 후에 출금할 수 있습니다.

⑤ 거래의 취소

“갑”的 요청에 의해 “을”이 처리한 내역은 취소하지 못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당일 입금분 중 전산장애, 착오입금(영업점 직원의 오조작, 이중입금, 계좌번호 오류) 등이 발생할 경우에 한하여 “을”은 동 거래의 취소를 “을”的 책임하에 “갑”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갑”은 이에 응하기로 합니다.

⑥ 면책

“을”的 책임이 아닌 통신기기 및 회선장애 또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한 업무처리의 지연이나 불능에 대하여 “을”은 그 책임을 면하며, 쌍방이 합의하거나 정한 방법에 따라 정당하게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갑"과 "을"은 그 책임을 면하기로 합니다.

⑦ 준용사항

업무와 관련한 각각의 대상계좌에 대한 개별적인 업무처리는 대상예금의 거래약관을 준용하고 "을" 이외의 타금융기관에 대한 자금이체는 금융결제원의 태행환공동망 (CD공동망, 전자금융공동 망 포함) 업무규약 및 세부처리지침을 준용하기로 합니다.

제 5 조 (서비스 제공 관련 등록정보)

Cyber Branch-F의 개별서비스 및 수수료지급 등을 위하여 필요한 등록정보는 아래의 정보에 의합니다.

수수료 출금계좌		
급여이체 출금계좌		
가상계좌	채변요청좌수	
	정산 모계좌	

제 6 조 (기타 사항)

본인은 「Cyber Branch-F 개설 및 이용신청서」에 추가하여 상기의 각 조에 기재된 조건으로 거래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_____ (인)

Cyber Branch-F 개설 및 이용약관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이 제공하는 'Cyber Branch-F'를 개설하고 이용하는데 따르는 '은행'과 서비스 이용기업(이하 '기업'이라 한다) 간의 권리, 의무, 책임사항, 서비스 이용조건 및 기타 필요한 모든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Cyber Branch-F'란 '기업'의 효율적인 자금관리 및 운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은행'이 대금수납, 대금지급 및 통합자금관리 등의 다양한 자금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종합자금관리 시스템을 말합니다.

제3조 (서비스 범위)

① '은행'이 '기업'에게 제공하는 'Cyber Branch-F'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Cyber Branch-F' 시스템 구축 : '기업'의 자금관리 업무에 맞춘 시스템 설계 및 개발
2. 대금수납 서비스 : '기업'의 대금수납 업무에 맞춘 각종 수납수단 제공, 수납내역 대사 등 '기업'과 은행이 상호 협의한 서비스
3. 대금지급 서비스 : '기업'의 대금지급 업무에 맞춘 각종 지급수단 제공, 거래결과 데이터 제공 등 '기업'과 '은행'이 상호 협의한 서비스
4. 통합자금관리 서비스 : 각 은행 계좌통합관리(계좌잔액 및 거래내역 실시간조회), 자금의 모계좌 집중, 자금의 배분 등 '기업'과 '은행'이 상호 협의한 서비스
5. 외환관리 서비스 : 외화예금조회, 수입대금송금, 신용장개설신청 등 '기업'과 '은행'이 상호 협의한 외환 관련 서비스
6. 부가 서비스 : 법인카드관리 서비스 등 '기업'과 '은행'이 상호 협의하여 추가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7. 운영지원 서비스 : 시스템 최적화 유지, 시스템 장애 시 복구 및 재설치, Client 프로그램의 유지 보수 등 '기업'의 원활한 서비스 이용을 위한 운영지원 서비스

② '은행'은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서비스 종류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으며, '기업'의 동의나 요청이 있는 경우 서비스 종류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제4조 (서비스 제공내역)

- ① '기업'이 'Cyber Branch-F'를 통해 이용할 서비스 종류 및 이용 수수료, 징수 방법은 'Cyber Branch-F 개설 및 이용 신청서'와 'Cyber Branch-F 수수료 내역서 및 추가 신청서'에 명시된 내용으로 합니다.
- ② '기업'이 'Cyber Branch-F 개설 및 이용신청서'와 'Cyber Branch-F 수수료 내역서 및 추가 신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추가 서비스를 요청하는 경우 상호 협의하여 추가할 수 있습니다.

제5조 (수수료)

- ① 기업인터넷뱅킹 등 각 서비스 별 개별 계약이나 별도의 이용신청에 의한 이제수수료 등 '은행'이 징수하는 수수료는 해당 수수료 징수기준을 적용합니다. 단, 'Cyber Branch-F 수수료내역서 및 추가 신청서' 등에 의하여 별도로 약정하는 경우 그에 따릅니다.
- ② 수수료 약정은 서비스 신청일로부터 1년 단위로 하며, 약정이 끝나는 날 1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수수료 변경 의사를 통보하지 않을 경우 1년 단위로 자동 연장됩니다. 단, 'Cyber Branch-F 수수료 내역서 및 추가 신청서' 등에 의하여 적용기간을 별도로 약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 ③ '은행'이 수수료를 변경할 경우 시행일 1개월 전까지 '기업'에게 서면 또는 서비스 화면에 공지하여 통지하기로 합니다. '기업'은 이의가 있을 경우 시행일 7일 전까지 서면으로 이의 사실을 통지하기로 하며, 동 기간 내에 '기업'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승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변경된 수수료를 시행일에 적용합니다.

제6조 (서비스 중지 및 해지)

- ① 다음 각호의 1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이 서비스를 해지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기업'이 서비스 이용 해지를 요청한 경우
 2. '기업'이 본 약관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3. 제5조 제3항에 의거 '기업'과 '은행' 쌍방이 수수료에 합의하지 못한 경우
 4. '기업'의 이용수수료 연체가 발생한 경우
- ② 전항 제4호의 경우 '은행'은 별도 통보 없이 해당 서비스를 중지시킬 수 있으며 '기업'에게 그 사실을 신속하게 통보하도록 합니다.
- ③ 서비스를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1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해지를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7조 (서비스 이용시간)

① 본 서비스의 이용시간 중 금융관련 서비스는 은행이 별도로 정한 인터넷뱅킹 이용시간에 따르며 금융관련 서비스 외 기타서비스는 별도로 정함이 없이 기업의 이용시간에 따릅니다. 단, 타 금융기관 등과 관련되는 거래는 해당 금융기관의 사정에 따라 예고없이 변경되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② '은행'이 정기점검 또는 기술상의 필요에 의해 특정서비스 및 전체서비스의 중단이 불가피한 경우, '은행'이 '기업'에게 사전통지 후 일시적으로 중지할 수 있습니다.

제8조 (서비스 원칙 및 의무)

- ① '기업'과 '은행'은 본 약관에 의하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의성실 및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 ② '기업'과 '은행'은 각 측의 시스템에 대한 보안대책을 강구합니다.
- ③ '기업'과 '은행'은 사고 발생을 인지하는 경우 이를 신속하게 조치하고 상호 통지합니다.

제9조 (기밀유지)

'기업'과 '은행'은 본 'Cyber Branch-F' 서비스와 관련되거나 상호 정보교환 등 업무처리 과정에서 인지 또는 획득한 정보를 이 업무처리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유출하여서는 안됩니다. 만약 유출된 내용이 쌍방 혹은 어느 일방에게 손실을 입힌 경우에는 그 책임 있는 당사자가 책임을 지기로 합니다.

제10조 (프로그램 등의 소유권)

'Cyber Branch-F' 서비스를 위해 '은행'이 '기업'의 시스템에 설치한 제반 프로그램은 '은행'이 소유권을 갖습니다.

제11조 (손해배상)

'기업'과 '은행'은 본 약관의 위반이나, 기타 일방의 규책으로 인하여 상대방이 금전적, 물질적 손해를 입은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당사자가 손해를 배상합니다.

제12조 ('은행'의 손실부담 및 면책)

'Cyber Branch-F'와 관련한 '은행'의 손실부담 및 면책은 '은행'의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제20조(손실부담 및 면책)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13조 (약관의 적용 및 변경)

- ① '기업'과 '은행' 사이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이 약관에서 정한 사항과 다를 때에는 그 합의된 사항이 이 약관에 우선하기로 합니다.
- ② '은행'이 제공하는 서비스 중 일부 서비스에 적용되는 개별약관이 있는 경우에는 이 약관에 불구하고 해당 개별약관이 우선 적용됩니다.
- ③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전자금융서비스이용약관, 기업인터넷뱅킹서비스이용약관, 예금거래 기본약관, 대상계좌의 관련약관, 기타 관련된 업무의 약관이나 관계 법령을 적용하며, 법에 명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관습에 의합니다.
- ④ '은행'이 이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일자 및 개정 사유를 명시하여 변경예정일 직전 1개월간 'Cyber Branch-F' 화면에 게시하여야 하고, 변경 내용이 '기업'에 불리한 경우에는 화면게시 외 서면,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변경전 최소 1개월 전까지 개별통지하여야 하며, '기업'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은행'은 '기업'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약관 변경 내용을 통지하였음을 확인해 주어야 합니다. 다만, 법령의 규정이나 제도의 개선 등으로 인하여 긴급히 약관을 변경할 때에는 'Cyber Branch-F' 화면에 즉시 이를 게시(최소 1개월 이상 게시)하고 서면,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개별통지하여야 합니다.
- ⑤ '기업'이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제4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 영업일까지 서비스를 해지할 수 있으며, 서비스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볼니다.
- ⑥ '은행'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해 약관의 변경내용을 게시하거나 통지할 경우, 제5항의 내용을 함께 통지합니다.

제14조 (분쟁해결 및 관할 법원)

- ① 이 약관의 해석과 관련하여 이견 또는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해당 관련 법규를 따르고 관련법규가 없으면 관습 및 신의성실 원칙에 입각하여 당사자간 상호 협의하여 해결하기로 합니다.
- ② 이 약관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이 제14조 제1항에 따라 원만히 해결되지 아니한 경우 이와 관련된 소송의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15조 (협의 및 합의서 등의 효력)

이 약관에서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으며, 필요 시 별도의 추가약정서 및 합의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추가할 수 있습니다.